

인천지방법원 2022. 6. 22 선고 2021가단251300(본소), 2021가단251317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 · 부당이득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희우

피고(반소원고) B

변 론 종 결 2022. 5. 25.

판 결 선 고 2022. 6. 22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5,6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1. 8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과 같다.

반소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36,71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원고는 2021. 6. 2.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,6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- 2)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 송금을 이유로 위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, 피고는 반환을 거부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양육비 지급은 위 송금 일자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인 2020. 1. 9.이 마지막이었고, 위 송금 당시는 원고가 피고에게 5,600,000원의 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원고 사용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프로그램 ‘자주쓰는 계좌’ 항목에는 원고가 송금하려고 하였던 C의 계좌와 근접한 위치에 피고의 계좌가 저장되어 있었고, 원고는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당일 곧바로 착오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는 착오로 피고에게 5,600,000원을 송금하였고, 피고는 위 돈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. 8. 19.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

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원고의 딸인 D를 2016. 1.경부터 2020. 1. 7.경까지 양육하였고,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월 1,500,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양육기간 4년간 72,000,000원(= 1,500,000원 × 48개월)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9,690,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, 미지급 양육비 중 2021. 6. 2.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,600,000원을 제외한 36,710,000원(= 72,000,000원 - 29,690,000원 - 5,600,00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로 월 1,5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임택준